

제 1440 호
1989. 6. 2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고
편집인 : 공보관 반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- ◎ 조 례
제 2451 호 : 서울특별시주차장에 대한 시새폐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 3
- ◎ 예 규
제 513 호 :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개정요령 3
- ◎ 고 시
제 1905 호 : 서울특별시계량증명업소계량실규모에 관한 고시 4
- ◎ 공 고
제 535 호 : 등급표시정지처분공고 5

(이면개속)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구 고 시	
제 10 호 : 하천공사준공인가고시	5
제 16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	6
◎ 구 공 고	
제 36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6
제 46 호 : 주택 자체생산업소행적차분	7
◎ 사 령	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에 관한 조례증정정조례본 이에 공포한다.

1989.6.22

서울특별시장인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2451 호

서울특별시 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에 관한조례를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제 1 항 및 제 2 항중 "주차대수 100 대이상의 주차전용시설"을 각각 "주차대수 40 대이상의 주차전용시설"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예 규

◎서울특별시 예규 제 513 호

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개정요령

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○ 제 2 장 수탁공사 시행 절차중 제 8 항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계약공사 대상을 결정한 담당자는 제 3 조에 백필만도를 작성하고 설계카드(서식제 5 호)에 실수로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며, 공사비는 분거점에서 양수기전까지(공동주택은 수양수기까지) 시비 부담으로 계약 시행하며, 양수기실 위치가 부적합(제 4 장 4 항 참조)할 경우 적정 위치로의 이설비용과 보호통이 노후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교체 비용및 육내 계약에 따른 특수시설물(마당포장, 정원시설, 기타 구조물등) 복구는 신청자가 부담 시행 한다. 단, 담당내부의 신청자가 부담 시행 하여야 할 사항은 신청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요령은 '89.6.20 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 2 장 제 8 항 (인입급수관 개량공사) 나. 개량공사 대상을 결정 완료한 담당자는 지적도에 배관망도를 작성하고, 설계카드 (서식제 5 호)에 실소요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며, 공사비는 대지 경계선 내부와 외부로 구분 작성하여 스캔의 결재를 득한후 대지경계선 내부의 공사비는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하며, 대지경계선 외부의 공사비 (복구비포함)는 시비 부담으로 시행 한다.</p>	<p>나. 개량공사 대상을 결정한 담당자는 지적도에 배관 망도를 작성하고, 설계카드 (서식제 5 호)에 실소요 공사비를 산출 하여야 하며, 공사비는 본기점에서 양수기전까지 (공동주택은 주양수기까지) 시비 부담으로 개량 시행하며, 양수기실 위치가 부지함 (제 4 장 4 항참조) 할 경우 적정위치로의 이설비용과 보호통이 노후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교체 비용 및 옥내 개량에 따른 특수시설물 (마당포장, 정원시설, 기타구조물등) 복구는 신청자가 부담 시행 한다. 단, 담장내부의 신청자가 부담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신청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.</p>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305 호
 서울특별시개량증명업소계량실규모에관한고시
 제당법 제 15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

시 개량증명업소 계량실 규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 1989.6.23
 서울특별시장 고 점
 다 음
 ○서울특별시 개량증명업소 계량실 규모는 10 개 이상으로 한다.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량증명업 등록업소는 이고시 규정에 의한 제량실용 갖추어 1989.12.31 까지 등록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10px auto;">공 고</div> 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535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등급표시점지처분공고</p> <p>공장품질관리 등급제 운영요령 제 20 조 1항 2호 및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9. 6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 울 특 별 시 장</p> <p>○ 하천공사 준공인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1) 업 체 명 : ㈜ 합 전</p> <p>2) 대 표 자 : 조 상 원</p> <p>3)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108</p> <p>4) 사정납품명 : 천동계 내외류, 외외류</p> <p>5) 처 분 사유 : 등급규격 미달</p> <p>6) 처 분 기간 : 공고일로부터 3 개월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10px auto;">구 고 시</div> <p>◎성동구고시제 10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천공사 준공인가고시</p> <p>하천법 제 23 조에 의해 시행한 하천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 하였기 인가사할 및 이로 인한 폐천지를 고시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9.6.22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동 구 청 장</p>				
<p>년월일</p> <p>'89. 6.19.</p>	<p>위 치</p> <p>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</p> <p>기 점 : 120-3</p> <p>종 점 : 120-21</p>	<p>공 사 명</p> <p>청계천하류구안 제방축조공사</p>	<p>준 공 내 용</p> <p>부지면적 : 23,604㎡</p> <p>방 수 계 : 627 m</p> <p>계방도로 { B = 36 m</p> <p style="margin-left: 150px;">L = 627 m</p> <p>호 안 : 10,063</p> <p>도로시설물</p> <p>{ 가로수 (은행나무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00 주</p> <p>{ 가로등 11 본</p>	<p>준공일자</p> <p>'87. 12.31</p>	<p>준공인가자</p> <p>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연준</p>

◎강동구고시제 16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
서울특별시 고시 제 596 호 ('88.7.5) 로 고시한 아태 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 20 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하고, 동법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89.6.22

강 동 구 청 장

- 다 음 -

1. 사업명: 길동한전 직강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
2. 사업주체: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주택조합 조합장 신문규 외 2 개조합
3.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규모
가. 위치: 강동구 길동 332 외 2 필지
나. 면적: 16,848.63 ㎡
다. 규모: 아파트 9층 2 동 162 세대 및 부대시설
4. 사업시행기간: 1988.7 ~ 1989.9

5.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결정조서: 도시계획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함)

구분	등급	유별	폭원 (m)	연장 (m)	사 검	종 검	비 고
기정	소로	3	6	108	강동구 길동 333 ~ 1	강동구 길동 333 ~ 1	신 설
변경	"	3	6	108	"	"	길동 333 ~ 2 필지가각 철폐 변경

구 공 고

◎종로구공고제 36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 고시 제 177 호 ('62.12.8) 로 결정 및 지적고시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

시행코져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하며,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유람기간내 종로구청 토목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989.6.22

종 로 구 청 장

- 공 랑 도 지 -
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 나. 사업개요

사업시행지	사업의 명칭	구 모	착 공 일	준공예정일
관운동 37 ~경운동 71	임사동진 - 교동국도 간도로확장공사	B=6 m L=170 m	인가일로 10 일 이내	1980.12.31

다. 사업시행자 : 종로구청장
 라. 수용할 토지 (건물) 조서 및 계획도면 : 생략
 마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토목과
 바. 공람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 사. 기타 상세한 것은 종로구청 토목과 (734-3152) 문의.

추진법 제 41 조의 2 제 3 호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제입 및 무단 건설로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달소 처분하였기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 40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.

◎양천구 공고제 46 호

주택자재 생산업체 행정처분

1989.6.22.

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소는 주택건설 양 천 구 청 장

다 음

등록번호	상 호	대표자	소재지	등록종목	청문일시 기 간	등록달소 사 율	등록달소 일 자
13-11	동신기업	조원환	신월동 244-2	시멘트벽돌	'89.5.22 ~5.30	무단제입	'89.6
13-6	보성콘크리트	정병문	신정동 39-1	"	"	무단건설	"
13-18	광명기업	유원근	삼월동 101-2	보통시멘트기와	"	"	"
13-19	동신기업	주동진	" 17-4	"	"	"	"
13-25	광선기업	곽효섭	" 535-7	"	"	"	"

사 령

◎ 1989년 6월 15일자 지방별정직 8 급상당공무원의원면직 명제 247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하경애	원에 의하여 그 직을 전함	구로부녀복지관	지방별정직 8 급상당

◎ 1989년 6월 21일자 7 급 공 무 원 면 직 명제 255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정영석	불문(경고)	시 민 과	지방행정주사보

가 능 직 공 무 원 면 직 명제 256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이충원	원에 의하여 그 직을 편함	경찰주 교통과	지방운전원 (10 등급)

◎ 1989년 6월 22일자 9 급토목직공무원파견및해제 명제 257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윤방식	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 치수과 파견 ('89.6.22-'89.10.20)	중 구	지방토목기원보
나재라	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 (치수과) 파견근무를 해제함.		

가 능 직 6 급 공 무 원 경 고 처 분 명제 258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손순권	불문경고(서울특별시 제2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)	한강관리사원소	지방화공기사

서울특별시강